

(군산해양경찰서)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

「해상교통안전법」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양 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오니, 허가필요수역으로 고시된 수역에서 해양레저 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구명설비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사전 군산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7월 23일

군산해양경찰서장

1. 고시수역

번호	항구명	소재지	고시수역(WGS-84기준)	
1	군산항	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	군산항 항로	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1. 북위 35도58분13.0초, 동경 126도21분30.0초 2. 북위 35도58분13.0초, 동경 126도27분52.0초 3. 북위 35도58분39.0초, 동경 126도29분28.0초 4. 북위 35도59분03.0초, 동경 126도30분31.0초 5. 북위 35도59분06.0초, 동경 126도31분52.0초 6. 북위 35도59분01.0초, 동경 126도32분58.0초 7. 북위 35도58분58.0초, 동경 126도34분09.0초 8. 북위 35도59분02.0초, 동경 126도35분37.0초 9. 북위 35도59분07.0초, 동경 126도38분02.0초 10. 북위 35도59분17.0초, 동경 126도39분01.0초 11. 북위 35도59분06.0초, 동경 126도38분59.0초 12. 북위 35도58분56.0초, 동경 126도38분07.0초 13. 북위 35도58분38.0초, 동경 126도33분01.0초 14. 북위 35도58분36.0초, 동경 126도31분54.0초 15. 북위 35도58분34.0초, 동경 126도30분48.0초 16. 북위 35도57분25.0초, 동경 126도27분52.0초 17. 북위 35도57분25.0초, 동경 126도21분30.0초

			A-0	1. 북위 35도57분05.0초, 동경 126도21분30.4초 2. 북위 35도57분05.0초, 동경 126도23분54.0초 3. 북위 35도55분04.4초, 동경 126도23분54.0초 4. 북위 35도55분04.4초, 동경 126도21분30.4초 의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
			A-1	1. 북위 36도00분06.8초, 동경 126도25분52.6초 2. 북위 36도00분09.6초, 동경 126도27분52.7초 3. 북위 35도58분40.0초, 동경 126도27분52.7초 4. 북위 35도58분40.0초, 동경 126도25분52.6초 의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
			A-2	1. 북위 35도57분25.0초, 동경 126도25분52.6초 2. 북위 35도57분25.0초, 동경 126도27분52.7초 3. 북위 35도56분10.0초, 동경 126도27분52.7초 4. 북위 35도56분10.0초, 동경 126도25분52.6초 의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
			A-3	1. 북위 35도56분10.0초, 동경 126도25분52.6초 2. 북위 35도56분10.0초, 동경 126도27분52.7초 3. 북위 35도55분04.4초, 동경 126도27분52.7초 4. 북위 35도55분04.4초, 동경 126도25분52.6초 의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
			A-4	1. 북위 35도59분15.0초, 동경 126도32분40.0초 2. 북위 35도59분16.0초, 동경 126도33분14.0초 3. 북위 35도59분08.0초, 동경 126도33분14.0초 4. 북위 35도59분08.0초, 동경 126도33분40.0초 5. 북위 35도59분00.0초, 동경 126도33분40.0초 6. 북위 35도59분03.0초, 동경 126도32분40.0초 의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
			비응항 서방	1. 북위 35도55분41.0초, 동경 126도31분48.0초 2. 북위 35도55분41.0초, 동경 126도31분05.0초 3. 북위 35도57분00.4초, 동경 126도31분13.2초 4. 북위 35도57분00.1초, 동경 126도31분24.0초 의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
			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공사구역	1. 북위 35도58분81.0초, 동경 126도31분18.0초 2. 북위 35도58분51.0초, 동경 126도30분14.0초 3. 북위 35도56분43.0초, 동경 126도30분18.0초 4. 북위 35도56분43.0초, 동경 126도31분11.0초 의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

2. (문의처) 군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해상교통계(☎ 063-539-2449)
3. (참고사항) 해양레저활동 허가 필요수역에서 허가 없이 스킨다이빙, 스쿠버 다이빙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때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자는 「해상교통안전법」 제118조제3항제1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4. (재검토기한)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종전 고시의 폐지) 종전 군산해양경찰서 고시 제2023-1호는 폐지한다.
- 제3조 고시수역에서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활동은 적용 제외한다.

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도

